

옥외광고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·부착된 광고물로서

앞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 옥외광고물

현수막

현수막은 종이 또는 천 등으로 만드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된 게시대 이외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에 해당됩니다.



벽보

불법벽보는 거리환경을 대단히 지저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광고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불법광고물입니다. 규격이 적은 스티커등의 불법광고물은 거리의 가로등주, 건물벽면, 공중화장실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떼어내더라도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서 거리환경을 저해하게 됩니다.



입간판

낮에는 사라지고 밤에는 보도상으로 튀어나오는 불법입간판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지장을 주고 조명광고까지 하면서 어린이들의 감전사고도 종종 있다고 하니 특별히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광고물입니다.

